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~② (생략)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7. (생략) 8. I클래스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7. (현행과 같음) 8. I클래스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기구 및</u> 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
<신설>	<u>부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</u>